

PCT國際出願 원貨 手數料 변경

特許廳 告示 89-2號로, 23% 引下

오는 90년 1월1일부터 PCT 國際出願에 따른 國際出願 수수료 중 기본료를 현행 45만5천원에서 23%인하된 35만2천원으로 인하조정하는 등 國際出願에 따른 원화 수수료체제가 변경된다.

特許廳은 지난 11월14일 商工部令 제704호 8항 규정에 의거 PCT국제출원시 出願人이 납부할 國際出願 수수료 원화 변경을 特許廳 告示 89-2호로 발표했다.

特許廳 告示에 따르면 국제요금 중 기본료에서 현행 出願書 30매 초과시 1매당 추가료를 9천원에서 7천원으로, 지정료 1개국당 납부할 요금을 11만원에서 8만5천원

으로 각각 22.2%, 22.7% 인하했다.

또한 조사료의 경우도 ▲日本 特許廳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현행 36만6천원을 30만7천원으로 ▲오스트리아 特許廳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현행 15만3천원을 12만4천원으로 인하하고 ▲호주 特許廳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는 현행 28만4천원에서 33만2천원으로 인상했다.

PCT 우선권서류 번역문 우선권 서류와 1개월내

特許廳은 PCT국제출원의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에 있어서 우선권 주장 서류를 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와 함께 번역문을 제출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운영지침을 개선했다.

特許廳의 제7차 工業所有權 실무협의회에 의해 확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PCT국제출원의 우선권 서류를 필요로 하는 대리인은 出願課에 비치된 우선권 서류 접수부를 열람한 후 대여받아 대여받은 대리인은 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와 함께 번역문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PCT국제출원과 우선권주장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번역문 대신 동일하다는 확인서로 종전과 같이 대체할 수 있게 했다. <♣>

商品細目 추가 및 細分化

特許廳審査1局 商標審査 担當官室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품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표1과 별표2의 상품구분증 상품세목이 2,800여개 품목으로 81년 8월31일 개정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업의 발달로 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품구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품의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금까지 업계 및 특허청에서 유사 상품으로 판단하여 등록하여 하였거나 신규로 도출된 상품명을 상품구분에 각 세목으로 추가하였고,

2. 동일상품이 2개류에 각각 등록된 상품들을 조정하여 총1,200여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 및 세분화 하여 수록하였

음.

3. 시행규칙상 구분된 상품세목중 불분명한 상품을 해석한 내용을 별도로 수록하였음.

4. 지정상품의 추가 및 세분화는 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 앞서 상품의 유사판단의 기준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임.